

고 시

◆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4-114호

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0(2012.1.12)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27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
 - 나. 면 적 : 20,643.7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
 - 나. 주 소 :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11.20.
6.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생략
(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)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 - 가. 대지면적 : 16,276.2㎡
 - 나. 건 폐 율 : 27.20%
 - 다. 용 적 율 : 234.08%

라. 높이(층수) : 44.09m(지하2층/지상15층)

마. 용 도 : 공동주택

8. 주택의 규모 등 : 아파트 7개동 3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9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가. 무상귀속 내역

1) 위치 :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

- 도 로 : 1,617.7㎡

- 근린공원 : 2,173.8㎡

- 공공공지 : 103.0㎡

10. 다른 법률의 인·허가 등의 의제

가.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
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다. 기타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사항

11.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」 제86조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사업의 종류	사업의 명칭	비 고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	동작동 102번지 일대 도로 개설공사	
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사업	동작동 102번지 일대 근린공원 조성공사	
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사업	동작동 102번지 일대 공공공지 조성공사	

다. 면적 또는 규모

사업의 종류	면적 또는 규모	비 고
도로	1,617.7㎡	무상귀속
근린공원	2,173.8㎡	무상귀속
공공공지	103㎡	무상귀속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대표자 성명 및 주소)

1) 성 명 :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

2) 주 소 :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

라. 사업시행기간(착수 및 준공예정일) :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개월

12.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 : 생략

【동작구청 주택과(☎ : 820-9776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임】

◆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4-115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27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2마길 57 외 4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동작구 양녕로22마길 57	2014. 11. 27	건물 멸실
동작구 흑석로6길 18-5	2014. 11. 27	건물 멸실
동작구 사당로16사길 16-23	2014. 11. 27	건물 멸실
동작구 사당로16사길 16-21	2014. 11. 27	건물 멸실
동작구 사당로16사길 16-19	2014. 11. 27	건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지적과(☎02-820-9113)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(www.dongjak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